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(안)

심사 보고서

2004. 12. 21.

행정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1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2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10회(제2차정례회) 제3차 위원회(2004년 12월 9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진)

가. 제정이유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·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, 예술단체의 단원 선발·운영 및 소요경비의 지원 등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구립예술단체의 종류 및 구성 - 안 제2조, 제3조
- 구립예술단체의 단원의 위·해족 - 안 제4조, 제5조
- 구립예술단체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- 안 제6조
- 정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- 안 제7조

다. 참고사항

-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(시책과 권장) 및 제25조(국고보조)
- 지방자치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- 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 제4조(진흥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찬재)

가. 조례제정의 타당성

-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문화예술단체를 육성·발전 시켜야 하나 우리구는 아직까지 우리구를 대표할만한 예술단체가 없는 실정으로 우리구의 위상제고와 문화창달을 위하여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봄.

나. 관계법령 검토

- 지방자치법 제9조, 제15조에 의하면 지방문화, 예술단체육성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
-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보호,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본 조례제정안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다. 예술단체 종류에 대한 검토

- 예술단체에는 합창단, 실버합창단, 청소년 교향악단, 민속예술단 등을 들 수 있다고 정하여 다양한 예술단체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,
- 대부분의 구가 1~2개의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구를 상징하는 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합창단, 실버합창단, 청소년 교향악단, 민속예술단을 들 수 있

다라고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라. 단원의 위촉에 대한 검토

-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,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,
-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도 조문을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.

마. 경비의 지원에 대한 검토

- 예술단의 지휘자, 반주자 및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,
-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운영비는 월 1백만원으로 1인당 월 2만원의 극히 적은 실비가 지급된다고 보겠음.

바. 시행규칙 내용

-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단체의 종류 및 정원, 단장 등의 직무, 단원의 자격, 임기(또는 정년), 전형방법 및 선발, 운영위원회 구성, 수당 등의 지급기준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(안)

의안
번호

132

제출년월일 : 2004. 11. 15.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문화·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, 예술단체의 단원선발·운영 및 소요 경비의 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,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구립예술단체의 종류 및 구성(제2조, 제3조)
- 나. 구립예술단체의 단원의 위·해촉(제4조, 제5조)
- 다.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(제6조)
- 라.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(1)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(시책과 권장) 및 제25조(국고보조)
 - (2) 지방자치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 - (3) 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 제4조(진흥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(2005년도 예산편성예정)
- 다. 입법예고(2004.10.27~11.15)결과 : 의견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25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(이하 "예술단체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종류) 예술단체에는 합창단, 실버합창단, 청소년교향악단, 민속예술단 등을 둘 수 있다.

제3조(구성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(이하 "단원"이라 한다)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(이하 "객원출연자"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제4조(단원의 위촉)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 다만,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,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.

제5조(단원의 해촉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원은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
2.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자
3.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
4.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계속하여 불참하는 자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1. 예술단체 기본운영계획수립·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
 2. 지휘자, 반주자 및 일반단원의 위·해촉에 관한 사항
 3.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

제7조(경비의 지원) ①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예술단체의 지휘자, 반주자 및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